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, ‘한 학기 또는 두 학기’에서 ‘한 학기’를 자유학기로 지정·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중학교의 장은 ‘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·운영’하고, 자유학기 ‘지정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’ 변경(안 제44조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3항 전단 중 “한 학기 또는 두”를 “한”으로, “지정”을 “지정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지정에”를 “지정·운영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학기) ①·② (생 략)	제44조(학기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(중학교 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)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(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 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) 중 <u>한 학기 또는 두</u> 학기를 자유학기로 <u>지정</u> 해야 한 다.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<u>지정에</u> 관 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</u> ----- ----- <u>지정·운영</u> ----- --. ----- ----- <u>지정·운영</u> <u>에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2022개정 교육과정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6725